|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  **산재보험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산재보험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4년 4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1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6월 18일  산재보험 행정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산재보험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산재 인정에 관한 행정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조례> 제14조 제(6)항의 '본인의 주요책임', 제16조 제(2)항의 '음주 또는 마약 흡입' 및 제16조 제(3)항의 '자해 또는 자살' 등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해당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서 발행한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성 의견 및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해야 하며 사고책임인정서 및 결론성 의견을 뒤엎을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위에 언급한 법률문서가 없거나 법률문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위의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산재보험조례> 제16조 제(1)항에 정한 '고의범죄'에 대한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기관 및 심판기관의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 또는 결론성 의견에 의거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산재인정 행정안건을 수리한 후 원고 또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노동중재를 신청했거나 민사사송을 제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안건의 심리를 중지해야 한다.  **제3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재보험 책임업체를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업체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2) 노무파견업체가 파견한 근로자가 사용업체에서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노무파견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3) 한 업체에 의해 기타 업체로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파견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4) 사용업체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그가 도급맡은 업무를 고용주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하였고 당해 조직 또는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업무 수행중에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업체가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5) 기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전 항 제(4),(5)호의 산재보험 책임업체가 배상책임 부담 후 또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보험대우를 지급한 후 관련 조직,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산재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고용업체 또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비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업체에서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던 중 또는 고용업체의 파견에 의해 기타 업체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본인의 업무직책과 관련 있는 여러개의 업무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합리적인 구역범위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4) 업무시간 중 합리적인 구역내에서 부상을 입었고 업무직책 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기타의 경우.  **제5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 기간'으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견에 의해 또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업무장소 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업무직책과 관련된 활동을 취급하는 기간.  (2)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견에 의해 외부 학습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기간.  (3) 근로자가 업무 수요에 따라 외출하여 활동하는 기타 기간.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기간에 업무 또는 고용주가 참여를 지시한 학습, 회의 내용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취급하던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재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출퇴근 도중'으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내에 업무장소와 주소지, 일상거주지,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사이의 합리적 노선을 왕복하는 출퇴근 도중.  (2) 합리적인 시간내에 업무장소와 배우자·부모·자녀의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 노선을 왕복하는 출퇴근 도중.  (3) 합리적인 시간내에 합리적인 노선에 따른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취급한 경우.  (4) 합리적인 시간내에 기타 합리적인 노선에 따른 출퇴근 도중.  **제7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근친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산재인정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체된 시간은 산재인정 신청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신청이 지체된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근친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정한다.  (1) 불가항력적 사유.  (2) 인신자유가 제한된 겨우.  (3)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등기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5) 당사자가 근로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중재를 신청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8조**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산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재를 인정한 후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민사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하에서 사회보험처리기구를 상대로 산재보험대우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산재를 입었고 사회보험처리구가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대우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제3자가 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9조** 산재인정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인정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소송 중에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산재 인정이 법에 따라 정정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할 시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기존 산재인정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 위반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기존 산재인정 업무에 착오가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이 과거에 반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工伤保险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工伤保险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4年4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1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9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4年6月18日  为正确审理工伤保险行政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工伤保险条例》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结合行政审判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人民法院审理工伤认定行政案件，在认定是否存在《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第（六）项“本人主要责任”、第十六条第（二）项“醉酒或者吸毒”和第十六条第（三）项“自残或者自杀”等情形时，应当以有权机构出具的事故责任认定书、结论性意见和人民法院生效裁判等法律文书为依据，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事故责任认定书和结论性意见的除外。  前述法律文书不存在或者内容不明确，社会保险行政部门就前款事实作出认定的，人民法院应当结合其提供的相关证据依法进行审查。  《工伤保险条例》第十六条第（一）项“故意犯罪”的认定，应当以刑事侦查机关、检察机关和审判机关的生效法律文书或者结论性意见为依据。  **第二条** 人民法院受理工伤认定行政案件后，发现原告或者第三人在提起行政诉讼前已经就是否存在劳动关系申请劳动仲裁或者提起民事诉讼的，应当中止行政案件的审理。  **第三条** 社会保险行政部门认定下列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单位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职工与两个或两个以上单位建立劳动关系，工伤事故发生时，职工为之工作的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  （二）劳务派遣单位派遣的职工在用工单位工作期间因工伤亡的，派遣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  （三）单位指派到其他单位工作的职工因工伤亡的，指派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  （四）用工单位违反法律、法规规定将承包业务转包给不具备用工主体资格的组织或者自然人，该组织或者自然人聘用的职工从事承包业务时因工伤亡的，用工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  （五）个人挂靠其他单位对外经营，其聘用的人员因工伤亡的，被挂靠单位为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  前款第（四）、（五）项明确的承担工伤保险责任的单位承担赔偿责任或者社会保险经办机构从工伤保险基金支付工伤保险待遇后，有权向相关组织、单位和个人追偿。  **第四条** 社会保险行政部门认定下列情形为工伤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职工在工作时间和工作场所内受到伤害，用人单位或者社会保险行政部门没有证据证明是非工作原因导致的；  （二）职工参加用人单位组织或者受用人单位指派参加其他单位组织的活动受到伤害的；  （三）在工作时间内，职工来往于多个与其工作职责相关的工作场所之间的合理区域因工受到伤害的；  （四）其他与履行工作职责相关，在工作时间及合理区域内受到伤害的。  **第五条** 社会保险行政部门认定下列情形为“因工外出期间”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职工受用人单位指派或者因工作需要在工作场所以外从事与工作职责有关的活动期间；  （二）职工受用人单位指派外出学习或者开会期间；  （三）职工因工作需要的其他外出活动期间。  职工因工外出期间从事与工作或者受用人单位指派外出学习、开会无关的个人活动受到伤害，社会保险行政部门不认定为工伤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六条** 对社会保险行政部门认定下列情形为“上下班途中”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在合理时间内往返于工作地与住所地、经常居住地、单位宿舍的合理路线的上下班途中；  （二）在合理时间内往返于工作地与配偶、父母、子女居住地的合理路线的上下班途中；  （三）从事属于日常工作生活所需要的活动，且在合理时间和合理路线的上下班途中；  （四）在合理时间内其他合理路线的上下班途中。  **第七条** 由于不属于职工或者其近亲属自身原因超过工伤认定申请期限的，被耽误的时间不计算在工伤认定申请期限内。  有下列情形之一耽误申请时间的，应当认定为不属于职工或者其近亲属自身原因：  （一）不可抗力；  （二）人身自由受到限制；  （三）属于用人单位原因；  （四）社会保险行政部门登记制度不完善；  （五）当事人对是否存在劳动关系申请仲裁、提起民事诉讼。  **第八条** 职工因第三人的原因受到伤害，社会保险行政部门以职工或者其近亲属已经对第三人提起民事诉讼或者获得民事赔偿为由，作出不予受理工伤认定申请或者不予认定工伤决定的，人民法院不予支持。  职工因第三人的原因受到伤害，社会保险行政部门已经作出工伤认定，职工或者其近亲属未对第三人提起民事诉讼或者尚未获得民事赔偿，起诉要求社会保险经办机构支付工伤保险待遇的，人民法院应予支持。  职工因第三人的原因导致工伤，社会保险经办机构以职工或者其近亲属已经对第三人提起民事诉讼为由，拒绝支付工伤保险待遇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第三人已经支付的医疗费用除外。  **第九条** 因工伤认定申请人或者用人单位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导致工伤认定错误的，社会保险行政部门可以在诉讼中依法予以更正。  工伤认定依法更正后，原告不申请撤诉，社会保险行政部门在作出原工伤认定时有过错的，人民法院应当判决确认违法；社会保险行政部门无过错的，人民法院可以驳回原告诉讼请求。  **第十条** 最高人民法院以前颁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